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154

2013. 11. 11

서울시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실태와 정책 추진방안

윤민석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154

2013.11.11

서울시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실태와 정책 추진방안

요약	3
I. 성인 발달장애인의 현황 및 사회서비스 실태	4
II. 선진 해외사례와 정책 시사점	10
III.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언	14

윤민석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02-2149-1016
msyoon@si.re.kr

요약

발달장애는 다른 장애유형과 달리 자립역량이 부족하여 평생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장애유형이다. 특히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서비스욕구가 증대하고 있으므로 성인 발달장애인과 최·중증장애인을 포함하는 서울시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비중은 작지만, 정책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인 발달장애인은 서울시 전체 장애인의 약 3%인 1만 8천여 명으로 이들은 다른 장애유형과는 달리 전 생애에 걸쳐서 보호가 필요하다. 따라서 자립생활을 목표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다른 유형의 장애인과는 차별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 발달장애인 실태 조사 결과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률이 평균 5% 내외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부족에 기인한다. 특히 희망하는 사회서비스 종류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자립생활 지원 및 여가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이용실태는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인기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선진 해외사례는 법적 근거를 토대로 서비스 전담조직을 구축하여 추진

선진 해외사례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법률로 명시하여, 생애주기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신설하거나 기존 조직의 기능 확대를 통해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었다.

성인·중증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애주기별 정책 추진이 필요

서울시 성인·중증 발달장애인의 서비스욕구를 충족시키는 정책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정비하고 공급확대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진단에서부터 생애주기별 단계에 맞는 정보 제공을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최·중증 과잉행동장애인 지원대책의 마련을 통해 거주 및 여가 시설을 보장해야 한다.

I . 성인 발달장애인의 현황 및 사회서비스 실태

시설과 서비스에서 소외된 성인 발달장애인

전체 등록장애인 중 비중은 작지만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

- 발달장애란 지적·자폐성 장애로 대표되는 장애유형
 - 자기표현·자기결정 등의 자립역량이 부족하거나 불가능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1~3급)이면서 다른 장애를 같이 가지고 있는 비율도 높은 장애유형
- 서울시 발달장애인은 총 27,099명이 등록(서울시 전체 등록장애인의 6.6%)
 - 서울시 전체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의 비중은 낮으나, 등급별로 구분할 경우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중증장애인이 19.1%를 차지

표 1. 서울시의 장애인 현황

계	지체	시각	청각	뇌병변	발달장애인		기타
					지적	자폐성	
407,528	208,074 (51.1%)	42,937 (10.5%)	41,977 (10.3%)	45,041 (11.0%)	23,206 (5.7%)	3,893 (0.9%)	42,400 (10.4%)

출처 : 서울시 행정자료, 2013년

- 다른 장애유형과는 달리 전 생애에 걸쳐서 보호가 필요
 - 자립생활을 목표로 하는 다른 장애유형과는 달리 발달장애인은 전 생애에 걸쳐 보호가 필요
 - 발달장애인의 보호 및 교육을 위해 가족의 부양부담 증가 및 소진현상이 발생
- 대상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시설이 부족
 - 의료기술의 발전 등으로 선천적 장애는 감소하고 있으나, 발달장애는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며,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생활시설 및 지역사회재활시설은 부족
 - 서울시의 장애인생활시설은 13개소로 2개 자치구당 1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수용인원은 전체 장애인의 0.3% 수준으로 시설이 부족

표 2. 서울시의 장애인생활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명)
	시설 수	정원
전국	226	12,161
서울	13	1,057

출처 : 2012년 장애인복지시설일람표, 보건복지부

- 서울시 장애인생활시설의 분포비율을 비교해보면, 전국적으로는 15.6명당 시설 1개소이나 서울시의 경우 25.6명당 시설 1개소로 생활시설이 타 지역과 비교할 때 미흡
- 지역사회재활시설은 342개소가 있으나, 시설 정원이 20명 내외로 서울시 전체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역부족

표 3. 서울시의 발달장애인 대상 지역사회재활시설 현황

소계	시설 수(개소)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체육관	
전국	1,387	119	485	119	637	27
서울	342	30	104	33	170	5

출처 : 2012년 장애인복지시설일람표, 보건복지부

특히 성인 발달장애인의 경우 서비스 공백 현상이 존재

- 학령기 이후에 취업을 못 하거나 활동을 할 수 없는 서울시 성인 발달장애인(10,589명, 서울시 전체 발달장애인의 39%)의 경우 돌봄 및 사회참여 제한의 문제가 발생
- 서울시 거주 전체 발달장애인의 61% 정도가 장애인복지시설 및 특수학교(학급) 등에서 각종 사회서비스를 수혜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지만 실제 이용률은 저조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중요 서비스의 이용률이 저조

- 서울 거주의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이용률은 낮은 수준
 -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자료(2011)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서비스 이용률이 5% 내외로 낮은 수준
 - 특히 40대 이후 성인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이용률이 저조
- 발달장애인의 필수 서비스로 간주할 수 있는 장애인활동보조인도 낮은 수준
 - 장애인활동보조인 서비스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제도이나 도입된 지 10여 년이 되었음에도 이용률이 저조
 - 주간보호, 지역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공동생활가정 등의 기타 시설 및 서비스 이용 실적도 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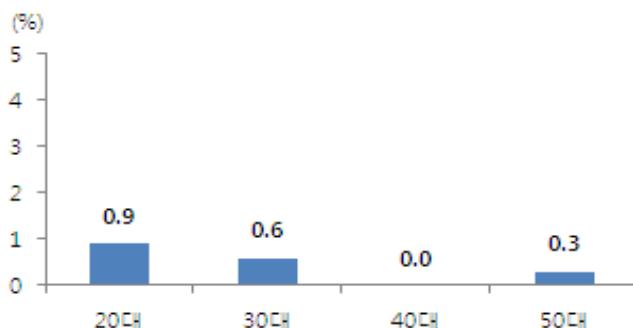


그림 1.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의 이용 여부

출처 : 윤민석, 2013, 서울시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서비스욕구와 정책과제, 서울연구원

-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실적이 감소
 - 지역사회복지관¹⁾의 경우 기관 특성상 다양한 서비스 대상이 이용하는 관계로 성인

1)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발달장애인의 접근성에는 제한이 있는 것으로 판단

- 또한 성인 발달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의 부족, 접근성 제한, 보호자 부재 등의 문제로 인하여 서비스의 이용실적이 저조
- 장애인복지관²⁾의 경우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으나, 대상연령층이 학령기로 제한되어 있거나 정원이 10명 내외이기 때문에 성인 발달장애인의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
- 따라서 다양한 성인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 접근성 증대를 위한 전문인력의 확충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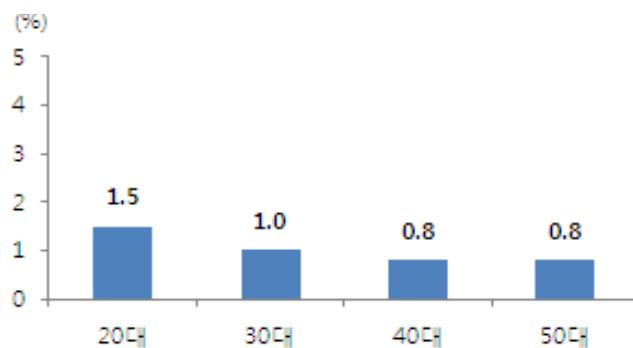


그림 2. 지역사회복지관 서비스의 이용 여부

출처 : 윤민석, 2013, 서울시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서비스욕구와 정책과제, 서울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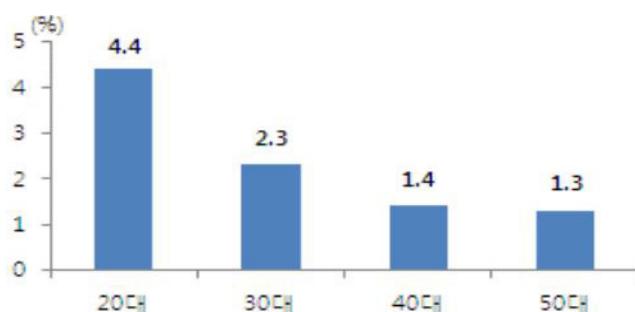


그림 3. 장애인복지관 서비스의 이용 여부

출처 : 윤민석, 2013, 서울시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서비스욕구와 정책과제, 서울연구원

2) 장애유형이 같거나 유사한 사람들을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의료, 교육, 직업, 심리, 사회 등의 재활서비스와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지역사회보호서비스의 경우 경증 발달장애인을 선호하는 현상이 발생
 - 지역사회보호서비스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 기관 운영의 용이성 문제로 경증 발달장애인을 선호하며, 근무자의 안전 등을 이유로 중증 이상 발달장애인의 보호를 기피하는 크리밍(Creaming) 현상이 존재

크리밍 현상

민간기관이 손쉽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대상자만을 골라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상. '체리 피킹'이라고 하기도 함(유길상, 2010).

- 또한 보호시설을 협오시설로 인식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외부활동이 제약되어 실내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됨으로써 성인 발달장애인의 이용률이 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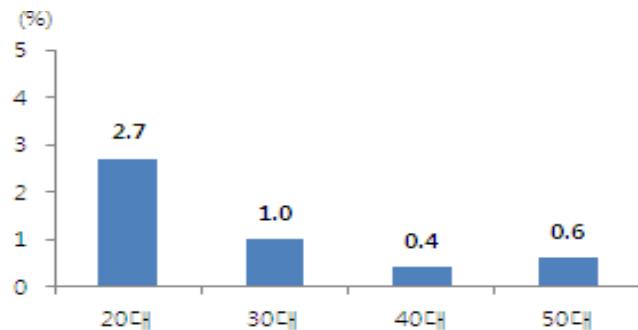


그림 4. 주간보호 서비스의 이용 여부

출처 : 윤민석, 2013, 서울시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서비스욕구와 정책과제, 서울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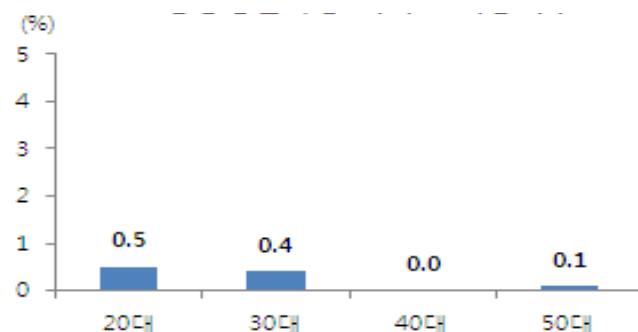


그림 5. 공동생활가정 서비스의 이용 여부

출처 : 윤민석, 2013, 서울시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서비스욕구와 정책과제, 서울연구원

- 성인 발달장애인의 희망하는 서비스는 다양하나 전달체계의 부족으로 당사자들의 욕구 충족이 곤란
 - 실태조사 결과 자립훈련 및 자기관리에 대한 필요성은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용한 경험이 적으며,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부재
 - 자립 준비 외에도 여가활동에 관한 욕구가 높은데, 이와 관련해 체육, 예술문화 활동 그리고 또래모임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으로 확인
 - 그러나 이러한 욕구는 개인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현재의 전달체계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점이 존재
 -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전달체계의 수립에 관한 추가 연구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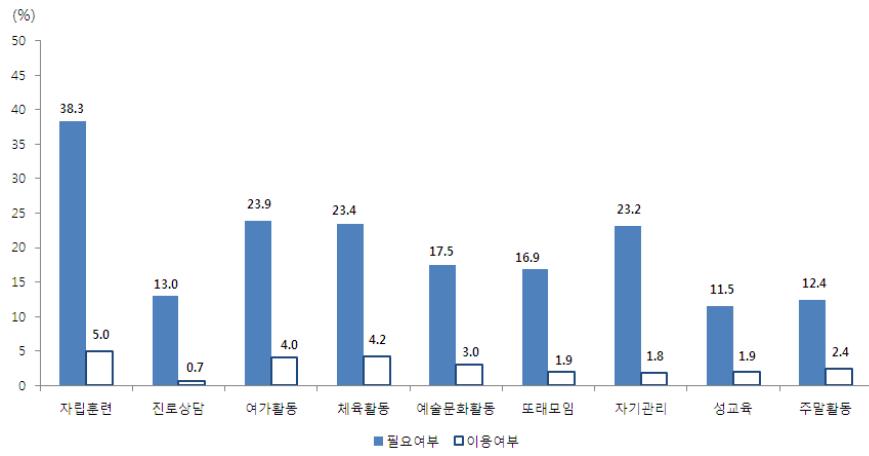


그림 6. 지역사회프로그램의 필요 여부 및 이용 여부

출처 : 윤민석, 2013, 서울시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서비스욕구와 정책과제, 서울연구원

II. 선진 해외사례와 정책 시사점

성인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법적 근거 및 전담부서가 필요

선진 해외사례 검토 결과, 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

-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County별로 발달장애인의 지원을 위한 Regional Center를 설립하여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
 - 캘리포니아주는 랜터만법(Lanterman Act)에 따라 발달장애 서비스 전담부서(California Department of Developmental Services : DDS)를 설치
 - 또한 지역별로 Regional Center를 설립·운영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가, 진단, 상담, 개인별 평생 서비스 계획·통합·조정, 자원 개발, 지역사회 옹호활동 및 프로그램 개발 활용, 가족 지원, 서비스 배치 및 모니터링, 지역사회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

표 4. Regional Center의 주요 서비스

서비스명	내용
주간보호/데이케어 서비스 (Day Program Services)	자생력 개발 및 유지능력 향상 상호작용 능력, 표현능력, 지시사항 준수능력 향상 자기 옹호 및 취업능력 개발 지역사회 통합능력 개발 문제행동 개선능력 향상 여가활용 능력 개발
직업서비스 (Vocational Services)	발달장애인을 위한 고용프로그램(Habilitation Service) 지원고용(Supported Employment) 작업활동(Work Activity Programs)
주거시설 제공 (Living Arrangements)	주택마련 서비스(Affordable Housing) 공동보호시설 : 그룹홈(Community Care Facilities) 체험홈(Family Home Agency) 위탁가정 서비스(Foster Family Agency) 자립생활 지원(Independent Living) 중증장애인 보호시설(Intermediate Care Facilities) 주정부 발달센터(State Developmental Centers) 생활지원서비스(Supported Living Services)

서비스명	내용
지원서비스 (Supported Services)	재가 활동보조서비스(In-Home Supported Services) 부모 휴식·보호서비스(Respite Services) 이동보조서비스(Transportation Service)
조기교육서비스 (Early Start Services)	보조공학, 청력학, 부모교육·상담·가정방문, 건강지원, 작업·물리·심리·언어치료 등

자료 : California Department of Developmental Services
홈페이지(<http://www.dds.ca.gov/DDSHomePage.cfm>)

- Regional Center는 개별화된 프로그램 계획(Individualized Program Plan : IPP)을 세우고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평생 지원
- 특히 학령기 동안은 교육기관인 학교가 서비스를 담당하게 되는데, 학령기에서 성인기로 전환될 때는 개별 전환 계획(Individualized Transition Plan : ITP)을 세워 지역 내 그룹홈이나 직업체활기관과 연계하여 추진



사진 1. 캘리포니아주 SONOMA 카운티 발달장애인센터의 전경 및 활동사진

-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2004년 발달장애자지원법을 제정하여 지방정부의 책무를 명시하면서 발달장애자지원센터의 설립을 명문화
- 발달장애의 조기발견, 발달지원에 관한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가를 위한 지원 등을 규정

- 특히 이 법은 발달장애인자지원센터의 설립 등 이후 시책으로 이어지는 개념도 포함되어 장애의 조기진단·의료·교육·취로·상담제도 등에 대한 발달장애인 지원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³⁾
- 발달장애인자지원센터의 설립으로 발달장애인의 특수한 복지욕구에 대응하는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졌으며, 본인과 가족을 포함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사 연구, 전문가 육성, 단체 지원 등을 명문화

표 5. 일본 발달장애인자지원센터의 업무

당사자 및 가족에 대한 직접지원	<p>상담지원 : 일상생활에 관한 여러 가지 상담에 대응 지역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제도와 이용방법, 여러 욕구에 대응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 시 타 기관과 연계 - 가정, 학교, 시설, 직장에서 발달장애인 본인과 가족에게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주변의 관계를 정비 - 지원자에게는 장애인 대응방안, 소통, 과제 정리 방안 등 구체적인 어드바이스를 제공
진료	<p>진료 : 마음의 문제를 가진 아동과 발달장애아에 대해 의사가 진료 단기 케어 : 등교 거부 혹은 마음의 문제 등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아동에 대해 단체 활동, 여가활동 등을 지원하여 사회생활을 바탕으로 필요한 생활기술과 적응력을 키움</p>
시·정·촌 및 관계시설과의 네트워크	<p>시정촌 지원 : 발달장애아 등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과 치료를 위하여 지역의 의료, 보건, 복지, 노동 등에 관련된 지역지원시스템을 구축</p>
보급계발·연수	<p>발달장애인 지원과 관련된 시설 및 단체와 연대 발달장애인인이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 내용과 특성, 대응방법 등에 관해 일반 지역주민(기업, 가족, 학교, 관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강좌 등을 개최 사회복지시설, 학교, 행정기관 등 지원자를 위한 실천연수</p>

자료 : 일본 발달장애인자정보센터 웹사이트(<http://www.rehab.go.jp>)



사진 2. 이바라키현 발달장애인자지원센터의 전경

3) 일본 후생노동청 홈페이지(<http://www.mhlw.go.jp/topics/2005/04/tp0412-1.html>) 참조

-
- 호주의 빅토리아주도 서비스 제공 의무를 법으로 명시하고 주정부에서 지원
 - 1986년에 지적장애인서비스법(Intellectually Disabled Person's Services Act)을 제정
 - 지적장애인을 위해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예 : 거주시설, 단기보호서비스 등), 지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의 조치, 유관 기관의 역할 등을 명시

정책 시사점

- 당사자, 가족에 대한 상담 지원 및 지역사회기관과 연계해 관련 정보를 제공
 - 발달장애인에 관련된 사회서비스뿐만 아니라 보호자인 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원을 위한 상담 지원 및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
-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접근성 보호를 법률로 보장
 - 발달장애인 개인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기관이 발달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 유지해야 하는 근거를 법률로 명시해 발달장애인의 권리 및 서비스 접근성을 보호
- 의료, 보건, 복지에 대한 연대 및 지원시스템을 지역주민 대상으로 홍보
 - 발달장애인의 진단, 평가와 관련된 기관 간 연계망 구축을 통해 발달장애인 및 가족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

III.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언

성인·중증 장애인을 포함하는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마련

성인·중증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맞춤형 정책으로 확장

- 학령기 아동 위주로 구성된 현 지원체계를 성인 발달장애인까지 확장하는 방안을 수립
 - 우선 기존 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사회자원 연계를 통해 비용 최소화 방안을 마련
 - 점진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예술문화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
- 진단에서부터 생애주기별 단계에 맞는 정보 제공을 위한 체계 구축이 필요
 - 사례 관리를 통해 욕구 파악 및 적절한 서비스 제공방안을 수립
- 최·중증 과잉행동장애인 지원대책 마련을 통해 거주 및 여가 시설을 보장
 - 성인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지원 및 전문시설 건립을 통한 보호부담의 경감방안을 마련

주요 추진전략

정책과제	추진전략
학령기 아동 위주로 구성된 지원체계를 성인 발달장애인까지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립 시설을 활용하여 발달장애인의 이용을 확대- 학령기 이후 일상생활 지원체계를 수립- 예술문화프로그램 확대를 통하여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참여 유도
생애주기별 단계에 맞는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내 거점기관을 통한 정보 관리- 사례 관리를 통한 욕구 파악 및 서비스계획 수립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정도에 따라 활동보조인 추가 지원 또는 추가수당을 지급-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시립 시설 건립 및 운영

지원체계는 성인 발달장애인까지 포함하여 확장

시립 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성인 발달장애인의 이용을 확대

- 별도의 시설 건립보다는 시가 관리·감독하는 주민 여가시설이나 이용시설(예 : 청소년수련관, 주민체육센터, 주민자치센터 등) 등에서 장애 관련 프로그램을 개설하거나 일부 시간대에 한하여 장애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
- 발달장애인 수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일반인과의 통합프로그램 개설을 유도하여 등록이나 수강 시 장애로 인한 차별이 없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학령기 이후 일상생활 지원체계를 수립

- 소규모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직업재활프로그램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내 소규모의 그룹홈을 건립하거나, 임대주택 분양 시 성인 발달장애인 그룹홈을 운영할 목적으로 지원할 경우 운영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통하여 거주시설을 확충

예술문화프로그램 확대를 통하여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참여 유도

- 성인 발달장애인은 예술문화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이 타 프로그램에 비해 높았으며, 일부 민간단체(예 : 하트하트재단에서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등)가 운영하고 있는 사례에서 볼 때 인식 개선의 효과도 존재

사례 : 발달장애인 청소년 ‘하트하트 오케스트라’

- 2006년 설립된 발달장애인 청소년 오케스트라로 지금까지 2,000여 회의 연주회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넘어 사회와 통합되는 모습을 선보이면서 소외된 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전하는 등 문화복지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



사진 3.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의 공연 사진

출처 : 하트하트재단 홈페이지

생애주기별 단계에 맞는 정보를 제공

지역사회 내 거점기관을 통한 정보 관리

- 대부분의 성인 발달장애인과 가족은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시설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망을 구축
 - 교육청이 운영하는 장애아동지원센터와 같은 기관을 발달장애인이나 성인 장애인을 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기 어렵다면 자치구별로 장애인 복지관이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
 - 또한 시청 장애인복지 홈페이지나 서울복지재단을 통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거나, 120 다산콜센터에서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경우 기존의 행정체계를 이용한 정보제공 체계 구축이 가능

사례 관리를 통한 욕구 파악 및 서비스계획 수립

- 학령기 아동에 집중된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의 범위 확대 방안이 필요
 - 학령기에서 성인기로 전환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교육, 여가 등과 관련된 자치구별 통합정보 제공 방안 마련이 필요
- 지속적인 사례 관리를 통하여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욕구에 대한 빠른 대응이 필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적극 지원

장애정도에 따라 활동보조인 추가 지원 또는 추가수당을 지급

- 인터뷰 결과 보호시설의 경우 경증 발달장애인만 선호하는 크리밍(Creaming)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증 이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호시설이 부족
 - 중증 이상 발달장애인의 경우 과잉행동 및 신체조건 등으로 인해 해당 시설의 종사자들이 보호 및 교육에 어려움이 존재
-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이용할 수 있는 생활시설이나 주간보호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
 - 전담 활동보조인 추가 배치 및 위험수당 신설 등의 지원체계 법제화로 이들이 지역 사회서비스 기관 및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배제되는 현상을 개선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시립 시설을 건립 및 운영

- 장기적으로 지역별 또는 자치구별로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을 보호하거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시립 시설을 건립·운영하여 성인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의 심리적 및 신체적 소진을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마련이 필요